

2025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1조 6,797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09억 5천 9백만원 대비 48.5% 증액 (5,487억 9천 8백만원)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계	13,547	1,130,959	1,679,757	1,666,209	548,798	122,995	48.5
세외수입	10,980	4,981	4,981	△5,999	0	△54.6	0.0
경상적세외수입	1,334	1,334	1,334	0	0	0.0	0.0
임시적세외수입	9,111	3,112	3,112	△5,999	0	△65.8	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9	29	29	0	0	0.0	0.0
지난연도수입	506	506	506	0	0	0.0	0.0
보조금	2,566	1,125,909	1,674,708	1,672,141	548,798	65,165.3	48.7
국고보조금등	2,566	1,125,909	1,674,708	1,672,141	548,798	65,165.3	48.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	68	68	67	0	6,700.0	0.0
보전수입등	1	68	68	67	0	6,700.0	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	구분	예산		추경예산	증감		비 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계		13,547	1,130,959	1,679,757	1,666,210	548,798	
세외수입		10,980	4,981	4,981	△5,999	0	
	그외수입	8,619	2,620	2,620	△5,999	0	
보조금		2,566	1,125,909	1,674,708	1,672,142	548,798	
	국고보조금	2,566	1,125,909	1,674,708	1,672,142	548,79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	68	68	67	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	0	0	△1	0	
	국고보조금등반환금	0	68	68	68	0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6조 8,040억 7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조 9,053억 3천 1백만원 대비 15.2% 증액(8,987억 4천 5백만원)
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4,670,473	5,905,331	6,804,076	2,133,603	898,745	45.7	15.2
행정 관 리	소 계	382,350	1,505,844	2,404,589	2,022,239	898,745	528.9	59.7
	행정운영경비	219,866	219,866	219,866	0	0	0.0	0.0
	재무활동	11,001	11,070	11,070	69	0	0.6	0.0
	사업비	151,482	1,274,908	2,173,653	2,022,171	898,745	1334.9	70.5
교부금		4,288,124	4,399,487	4,399,487	111,363	0	2.6	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2025예산		2025년도제2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당초	기정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670,473,275	5,905,331,350	6,804,075,750	2,133,602,475	45.7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0	1,123,078,350	2,021,876,750	898,798,400	순증
서울혁신파크 운영	60,000	60,000	6,000	△54,000	△90.0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1조 6,797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09억 5천 9백만원 대비 48.5% 증액(5,487억 9천 8백만원) 조정하려는 것임.
-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2차(5,487억 9천 8백만원) 교부가 8월 27일에 통보(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535)됨에 따라 이를 행정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계		13,547	1,130,959	1,679,757	1,666,209	548,798	12299.5	48.5
세외수입		10,980	4,981	4,981	△5,999	0	△54.6	0.0
경상적세외수입		1,334	1,334	1,334	0	0	0.0	0.0
임시적세외수입		9,111	3,112	3,112	△5,999	0	△65.8	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9	29	29	0	0	0.0	0.0
지난연도수입		506	506	506	0	0	0.0	0.0
보조금		2,566	1,125,909	1,674,708	1,672,141	548,798	65165.3	48.7
국고보조금등		2,566	1,125,909	1,674,708	1,672,141	548,798	65165.3	48.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	68	68	67	0	6700.0	0.0
보전수입등		1	68	68	67	0	6700.0	0.0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세부사업		기정예산(A)	2025년제2회 추경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 사유
세 입		1,130,959	1,679,757	548,798	
자 치 행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국고보조금)	1,123,078	1,671,877	548,798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2차 교부에 따른 세입 편성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1차 국고보조금(1조 1,230억 7천 8백만원) 교부는 7월 14일에 통보(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801)됨에 따라 예산에 간주처리(7월 15일)되어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 간주처리 내역 : 1,123,078,350천원 (' 25. 7. 교부 및 간주처리 完)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예산과목	기정예산	변경예산	부담기관	예산과목	기정예산	변경예산	주관부서
보조금 (국고보조금)	-	1,123,078,350	행정안전부	사회보장적 수혜금	-	1,118,181,525	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4,896,825	

※ 사업명 : (정책)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단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세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 행정국, 2025년 3분기 행정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2025.9., 4면 재인용.

- ※ “간주처리”는 회계연도 중에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교부된 경우 추경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지방의회의 예산 승인이 된 것으로 이를 간주처리 하고, 사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말함.
-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중 제9조에서 간주처리를 규정하고 있음.¹⁾

1)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차로 교부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의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행정국은 간주처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추진일정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부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국비 12조 1,709억원) '25.7.4.

- 당초 정부안인 서울 70%, 그 외 80%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임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통보 '25.7.5.

- 지원대상/규모: 국내 거주 중인 전 국민 대상/ 1인당 15 ~ 45만원
※ 2차 지급 합계 시 전 국민 1인당 15 ~ 55만원
- 신청방식: 온·오프라인 선택 신청
-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신청기간: 7.21.(월) ~ 9.12.(금) ※ 사용기한: ~ 11.30.(일)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예산(1차) 통보 및 교부 신청 안내 '25.7.11.

(단위 : 천원)

구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계	9,205,616,440	8,060,439,126	1,145,177,314
서울	1,497,437,800	1,123,078,350	374,359,450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고보조금 1차 교부 결정 통지 '25.7.14.

○ 국고보조금(1,123,078,350천원) 간주처리 '25.7.15.

○ 국고보조금 1차 자치구 교부 '25.7.16.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실시 '25.7.21.

- 신청 첫주차, 서울시 1차 신청 대상자 9,130,206명 중 6,500,418명 신청 완료(71.2%)
- 2025.8.31.(일) 기준 8,920,770명 신청 완료(97.7%)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예산(2차) 통보 및 교부 신청 안내 '25.8.22.

- 행정안전부에서 2차 대상사 DB를 확정하지 못하여, 1차 대상자의 80%에 해당하는 7,304,165명에 대한 사업비만 산출(총사업비 미정)

※ 잔여분은 향후 대상자 확정 시 교부한다고 공지

(단위 : 천원)

구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계	4,055,852,800	3,540,507,840	515,344,960
서울	731,731,200	548,798,400	182,932,800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고보조금 2차 교부 결정 통지 '25.8.27.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의안번호 3125) '25.8.29.
 - 2차 국고보조금(548,798,400천원) 행정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으로 제출

-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2차 지급 대상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행정안전부는 먼저 1차 대상자의 80%에 대한 사업비만 산출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5,487억 9,800만원)하고, 잔여분은 향후 대상자 확정 시에 교부한다고 하고 있는바,
 -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과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라 함)는 2차 지급 대상자의 조속한 확정 및 국고보조금 선지급 규모 확대 요청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세출예산

-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6조 8,040억 7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조 9,053억 3천 1백만원 대비 15.2% 증액(8,987억 4천 5백만원)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증액(8,987억 9천 8백만원) 1건과 “서울
혁신파크 운영” 사업의 감액(5천 4백만원) 1건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4,670,473	5,905,331	6,804,076	2,133,603	898,745	45.7	15.2
행 정 관 리	소 계	382,350	1,505,844	2,404,589	2,022,239	898,745	528.9	59.7
	행정운영경비	219,866	219,866	219,866	0	0	0.0	0.0
	재무활동	11,001	11,070	11,070	69	0	0.6	0.0
	사업비	151,482	1,274,908	2,173,653	2,022,171	898,745	1334.9	70.5
교부금		4,288,124	4,399,487	4,399,487	111,363	0	2.6	0.0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세부사업		기정예산(A)	2025년제2회 추경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 사유
세 출		5,905,331	6,804,076	898,745	
자치 행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소계)	(x1,123,078) 1,123,079	(x1,671,877) 2,021,877	(x548,798) 898,798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부담분 및 2차 국고보조금 교부분 세출 편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x1,118,182) 1,118,182	(x1,665,994) 2,014,794	(x547,812) 896,612	소비쿠폰 지급분

부서/세부사업		기정예산(A)	2025년제2회 추경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 사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4,897) 4,897	(x5,883) 7,083	(x986) 2,186	소비쿠폰 사업 집행을 위한 보조 인력 인건비 등 부대비용
시민 협력과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무관리비)	60	6	△54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 후 후속 조치 관련, 물품 정리 등 원상복구 비용 미발 생하여 불용 예산액 감액

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결정(’25년 6월)에 따라 기정 예산(국비 1조 1,230억 7,900만원) 대비 8,987억 9천 8백만원(국비 5,487억 9천 8백만원+시비 3,500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2조 218억 7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려는 것이고, 서울시는 재정분담액(3,488억원)과 부대비용(12억)을 포함한 3천 5백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예정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021,876,750	1,123,078,350	898,798,400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014,793,900	1,118,181,525	896,612,37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82,850	4,896,825	2,186,025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국 고 보 조 재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896,612,375,000원 = 896,612,375천원
	증감사유
	전국가적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집행을 위해, 서울시 시비 매칭분 및 2차 국고보조교부금 추가 편성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경비 2,186,025,000원 = 2,186,025천원
	증감사유
	소비쿠폰 사업 집행을 위한 보조인력 등 부대경비 추가 편성

- 정부는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하며 경기 부진 심화와 코로나 시기 누적된 채무로 자영업자 연체율*·폐업률 상승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²⁾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을 포함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³⁾ 재원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고보조율을 80%로 산정하되, 서울시만 70%로 제출하였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75%, 그 외 지역은 90%로 확정·의결('25.7.4.)하였음.

* 경제성장률(전기비, %): ('24.1Q)1.2 (2Q)△0.2 (3Q)0.1 (4Q)0.1 ('25.1Q)△0.2

* 연체율(한은, %): ('19) 0.79 ('20) 0.56 ('21) 0.52 ('22) 0.69 ('23) 1.22 ('24) 1.67

* 서민·취약계층 어려움 '25.1/4분기 분위별 소득변동(전년동기비, %) : (1분위)△1.5 (2)1.9 (3)2.9 (4)5.8 (5)5.6

출처 : 대한민국 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년 6월 23일, 1-4면 참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개요 〉

- 지급대상 : '25.6.18. 기준 국내 거주 국민
- 접수시작일 : (1차) 7.21.(월) ~ 9.12.(금) / (2차) 9.22.(월) ~ 10.31.(금)
- 지급수단 : ① 신용·체크카드, ② 선불카드, ③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 지급금액 : 1인당 15만원 ~ 50만원

구 분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상위 10%	소득하위 90%		
합계	15만원	25만원	40만원	50만원
1차 선지급	15만원	15만원	30만원	40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 추가 지원 : 비수도권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1인당 5만원

- 사용기한 : '25.11.30.(일)까지 ※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서울시 관내 사용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지역과 동일
- 사용업종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2)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년 6월 23일, 1-2면 참조.

3)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제출 2025년 6월 23일.

- 국고보조율은 당초 정부 제출안(서울시 70%, 그 외 80%)보다 수정되었으나 (서울시 75%, 그 외 90%), 서울시만 75%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는바,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나, 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회 의결 과정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5년 5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서울시 인구수(932만8천명)는 경기도 인구수(1,370만6천명) 보다 적음에도, 서울시 소비 쿠폰 매칭지방비(1차+2차 80%,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5,572억9천2백만원)가 경기도 소비 쿠폰 매칭지방비(1차+2차 80%, 경기도 본청 및 시 3,279억9천3백만원) 보다 훨씬 높음.⁴⁾
- 이는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기초생활 수급자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분담 비율로 서울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는바, 향후에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및 국회 의결 과정에서 국고 보조비율의 적정성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고려한 보조율 반영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시는 분담 비율(국비 75%, 서울시 25%)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자치구와의 분담 비율을 6:4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분담 비율을 9:1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재원부담 비율 조정 공동건의문”을 2025년 7월 10일 발송하였고,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도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분담 비율을 서울시도 9:1로 동일하게 적용, 서울시-자치구 간에도 동일하게 9:1로 분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분담비율 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2025년 8월 8일 발송하였음.
- ※ 서울시도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세출구조 조정 등 가용 재원을 모두 사용해 현재 활용 가능한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고 하고 있음.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매칭지방비는 1차와 2차 소비쿠폰 지방비이고,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금 교부(2차) 계획('25.8.21.)의 민생회복지원금 보조금 배분(안)에서 확인하였고, 현재 2차 지급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 2차 보조금은 1차 대상자의 80%만 보조금을 교부하고, 잔여분은 향후 대상자 확정 시 교부한다고 하고 있음.

- 다음으로, 서울시 1차 신청 대상자 913만 206명(전국민) 중 97.7%(892만 770명, 2025.8.31.현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완료하였고,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급이 9월 22일부터 신청·지급 예정됨에 따라 8,987억 9천 8백만원(2차 국고보조금 중 일부 5,487억 9천 8백만원, 서울시 부담액 3,500억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이나,
- 현재까지도 2차 지급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 2차 국고보조금은 2회로 나누어서 교부 할 예정이며, 금번 추경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교부(‘25.8.27.)된 1회분 국고보조금(5,487억 9천 8백만원)을 반영·편성하였고, 서울시 부담액(1차분 시비와 2차분 시비 추정 금액을 반영한 3천 5백억원)은 확정된 부담액이 아니므로, 2차 지급 대상자 확정에 따라 서울시 부담액이 증가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울시 1차 신청 대상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전체 서울시민	한부모·차상위	기초수급자	인구감소	비수도권
서울	9,130,206	53,796	453,232	0	0

※ 출처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금 교부 계획(안)」, 2025.7.10. 자료 재인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서울시 총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국비(75%)	시비(15%)	구비(10%)
총계	2,325,714,770	1,744,286,078	348,857,216	232,571,477
1차	1,497,437,800	1,123,078,350	224,615,670	149,743,780
2차	828,276,970	621,207,728	124,241,546	82,827,697
1회	731,731,200	548,798,400	109,759,680	73,173,120
2회	96,545,770	72,409,328	14,481,866	9,654,577

* 소요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용+부대비용(발행비용, 인건비, 장비임차료, 홍보비) 포함.

** 2차는 현재 지급대상자 미확정으로 1회 국고보조금 548,798,400천원이 8월 27일 교부되었고, 2회 국고보조금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정금액임.

※ 출처 : 행정국, 2025년 8월 29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재인용.

※ 서울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요예산 추계에 따르면, 1차와 2차 소비쿠폰, 부대비용, 예상 출생아수까지 반영하여 서울시 부담액을 총 3,492억 3,148만원이라고 추계하고 있음(행정국, 2025년 9월 2일 제출자료 참조).

- 셋째, 지방채 발행이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활용 목적이 아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 용도에 맞는 것인지 검토가 요망 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나, 관련 법률개정안은⁵⁾ 아직 국회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으로⁶⁾ 서울시는 불가피

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의안번호 2211045, 제안 2025.6.24.)은 자치 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필요시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의안 번호 2211223, 제안 2025.7.2.)은 지방채 발생 대상에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위해 안 제11조 제1항제7호 신설하기 위한 것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 최종방문 2025년 9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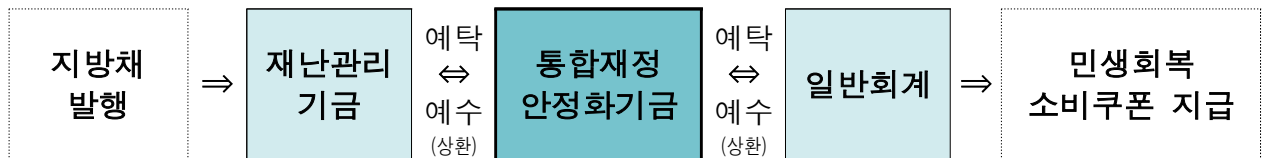
6) 현재 관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2025년 8월 26일 제428회 국회(임시회) 행정 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회안에 반영 폐기되었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 최종방문 2025년 9월 3일).

하게 재난관리기금 확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서울시 부담액(3천5백억원)을 마련 하려는 것임.

- ※ 행정안전부의 “재난·재해기금의 여유재원 예탁”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르면, “재난·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인용하고 있어⁷⁾ 서울시는 부담액 3천 5백억원을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후, 재난관리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예수를⁸⁾ 통해 일반회계로 하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사용할 계획임.

<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 >

- 신청기관/신청일 : 행정안전부 / '25.7.30.(수)
- 건 명 : 재난·재해기금의 여유재원 예탁 관련(인용)
- 주요내용 : 재난·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출처: 행정국, 2025년 9월 1일 제출자료 재인용.

-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 다양한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기금으로,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고 있음.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여유 재원을 자금이 필요한 각종 회계 및 기금에 예탁하여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또한, 서울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세입 감소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간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규모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방채 발행 여력 부족 및 서울시 재정여력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⁹⁾ 금번 지방채 발행으로 서울시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7)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324,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예수·예탁 관련 감사원 사전 컨설팅 결과 안내, 2025년 8월 21일 참조.

8) “예탁”은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용자하는 것이고, “예수”는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활용·보관하는 것을 말함,

9) 서울특별시, 『2025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2025년 성과주의 예산개요)』, 2025년 4월, 9면 참조.

-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 후, 재난관리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예수를 통해 일반회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3,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안번호 3129)」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3127)」을 제출하여 각각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이 두 안건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의결되어야만 지방채 발행 및 기금간 예탁·예수 과정을 거쳐 일반회계로 전입(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할 수 있어, 각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처리 결과 확인 후 행정국의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서울혁신파크 운영

- 동 사업은 서울혁신파크 운영종료('23.12.31.) 이후 부지 내 무단점유 단체 퇴거를 위한 법적 대응 및 잔여물품 정리 등 원활한 원상복구를 위한 사업이었으나, 예산 편성 후 무단점유 단체 자진 퇴거('24.12.27.)로 불용 예상되는 5천 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6,000	60,000	△54,000
사무관리비	6,000	60,000	△54,000

※ 서울혁신파크(은평구 녹번동 7 일대)에는 총 120개의 입주단체가 있었고, 115개 단체는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자진 퇴거하였고('23.12.기준), 이후 소송 제기를 통해 4개 단체가 추가로 퇴거하였으며, 2024년 10월 기준으로 1개 단체가 무단 점유 상태로 명도소송을 위해 2025년 예산으로 소송대응비, 물품 운반비 등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입주단체 : 120('23.1.) → 5개('23.12., △115개) → 1개('24.10., △ 4개)

- 이는 무단점유 단체 및 단체 관련자들의 무단점유 공간 정리 및 자진 퇴거(24.12.27.), 건물 인도 소송의 종결(25.1.17.) 등으로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의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집행잔액 중 예비적 집행 수요를 대비한 160만원을 제외한 불용예상액 5천 4백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무관리비’ 감액은 적절하다고 하겠음.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¹⁰⁾

〈 “서울혁신파크 운영”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 행 내 역
합 계	60,000	4,400	55,600	
사무관리비	60,000	1,100	55,600	- 서울혁신파크 후속조치 법률자문(5건)
		3,300		- 법률사건 위임비용(1건)

※ 출처: 행정국, 2025년 9월 1일 제출자료.

- 다만, 지난 1월(건물 인도 소송의 종결) 이후에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 예산 불용이 예상되었음에도, 지난 6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지 않았는바, 이는 그 재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국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서 “직원 후생복지 지원”(△6천3백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3천5백만원) 2건 감액과 “직장교육활성화”(1억 8백만원) 등 5건 증액으로 전체적으로 1,114억 7천 9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음.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문 숙
---------	-------	-------	-------

10)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4년 7월, 350면 참조.

참고자료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경과

- '25.6.19.(목)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포함 정부 추경 편성안 국무회의 의결(국비 10조 3천억 원)
- '25.7.4.(금) 정부 추경 국회 통과(국비 12조 1709억 원)
 - 당초 정부안인 서울 70%. 그 외 80%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임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지급

1인당 지급금액

7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안		국회확정	
	추가지급	총지원금	추가지급	총지원금
수도권	-	15~50만원	-	15~50만원
비수도권	-	15~50만원	3만원	18~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2만원	17~52만원	5만원	20~55만원

*추가지원금은 1차(소득 구분없이 전국민대상) 지급시 함께 지급

- '25.7.5.(토) 제29회 국무회의, 추경 의결
- '25.7.5.(토)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지급계획 발표
 - '25.7.5.(토) 행안부, 1차 지급계획 통보 공문 발송

- 지원대상/규모: 국내 거주 중인 전 국민 대상/ 1인당 15 ~ 45만원
- ※ 2차 지급 함께 시 전 국민 1인당 15 ~ 55만원
- 신청방식: 온·오프라인 선택 신청
-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신청기간: 7.21.(월) ~ 9.12.(금) ※ 사용기한: ~ 11.30.(일)

- '25.7.8.(화) 행안부, 1차 사업지침 알림

○ '25.7.8.(화) '25년 7월 긴급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개최

- 장 소 : 서울시청 기획상황실
- 참석자 : (市)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재정기획관 외 관련 부서장 등
(區) 부구청장 23명 (용산, 강남 대참)

○ '25.7.9.(수) 제198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개최

- 장 소 : 서울시청 기획상황실
- 참석자 : (市)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주택실장,
재무국장, 행정국장 재정기획관 등
(區) 구청장 8명(종로, 중구, 광진, 동대문, 서대문, 양천, 송파, 강동), 부구청장 16명

○ '25.7.10.(목)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재원분담 비율 조정 공동건의문 발송

-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분담 비율을 9:1로 조정 건의
- 영등포·강동 등은 국비:지방비 분담비율이 9:1로 선변경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

○ '25.7.10.(목) 행안부, 집행 관련 자치단체 예산운영 방향 알림

< 행안부 예산운영 방향 >

1. 국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신속한 추경 편성 추진
2. 즉시 추경편성이 어려운 경우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집행
 - 1차 지급분은 국비(7,8월 교부)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지방재정법 제45조)'을 통해 즉시 집행
 - 2차 지급분(지방비가 포함) 예산지출 전에 자치단체 추경완료(~9월) 필요
 - 추경 편성전 또는 추경 편성이후 예산 초과시 긴급한 재정소요가 있는 경우 예비비 지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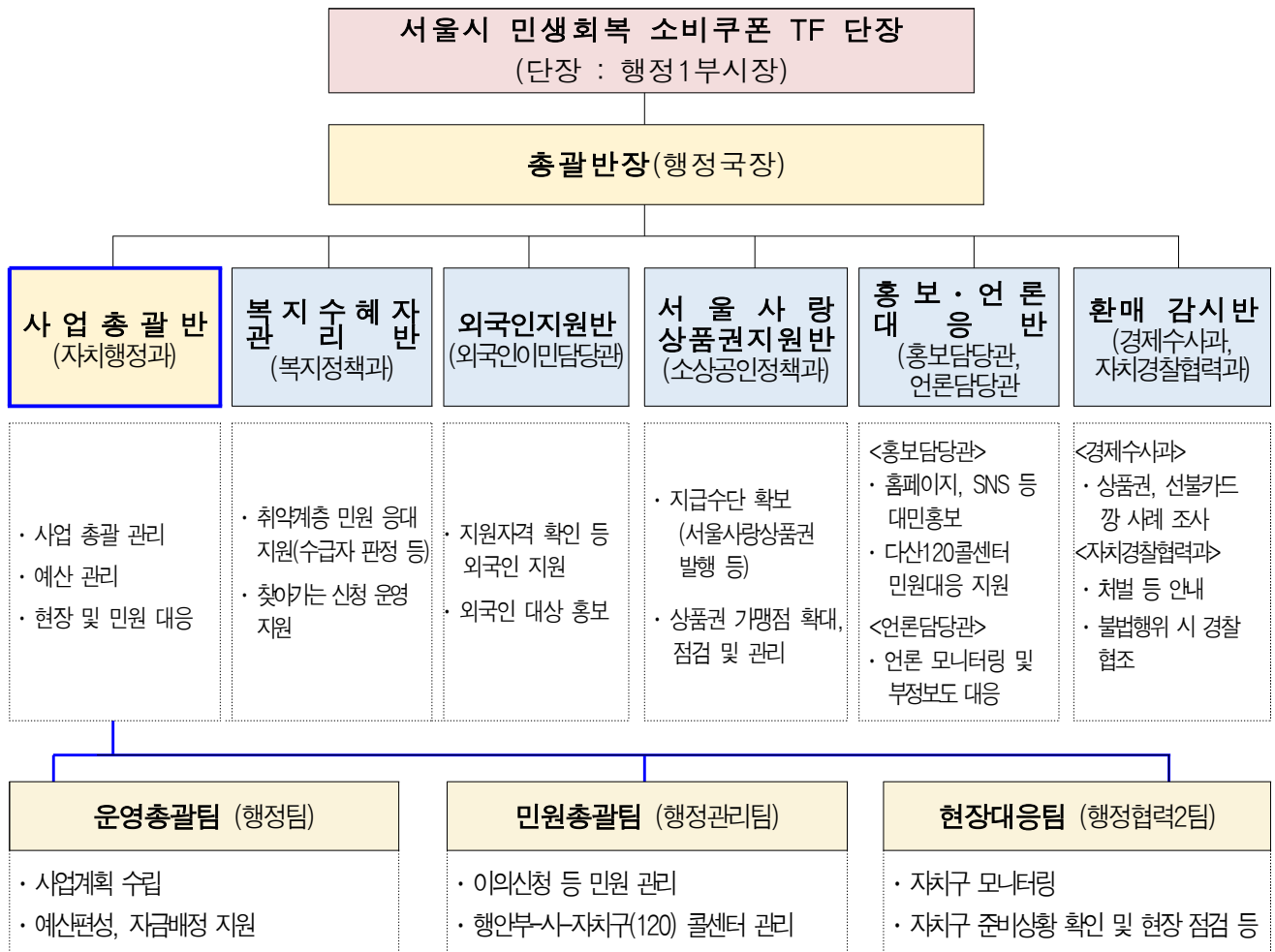
○ '25.7.11.(금) 행안부, 1차 국고보조금 확정 예산 통보 및 교부 신청 안내

(단위 : 천원)

구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계	9,205,616,440	8,060,439,126	1,145,177,314
서울	1,497,437,800	1,123,078,350	374,359,450

○ '25.7.14.(월) 서울특별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집행계획

- 서울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단 구성



○ '25.7.16.(수) 국고보조금 1차 자치구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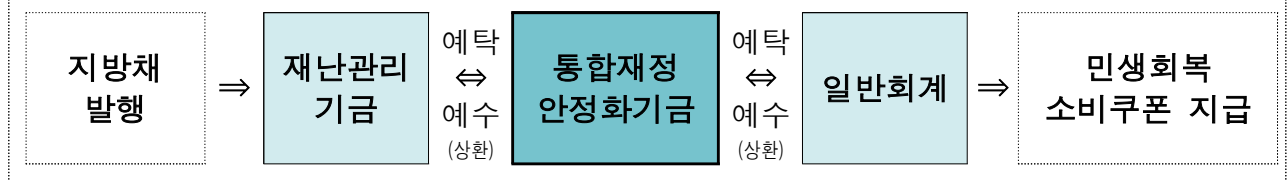
○ '25.7.21.(월) 1차 지급 실시

- 신청 첫주차, 서울시 1차 신청 대상자 9,130,206명 중 6,500,418명 신청 완료(71.2%)
- '25.8.31.(일) 기준, 8,920,770명 신청 완료(97.7%)

○ '25.8.22.(금) 행안부,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원 예수·예탁 활용 가능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인용 결과 안내

<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 >

- 신청기관/신청일 : 행정안전부 / '25.7.30.(수)
- 건 명 : 재난·재해기금의 여유자원 예탁 관련(인용)
- 주요내용 : 재난·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자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판단됨



○ '25.8.22.(금) 행안부, 2차 국고보조금 확정 예산 통보 및 교부 신청 안내

- 행정안전부에서 2차 대상자 DB를 확정하지 못하여, 1차 대상자의 80%에 해당하는 7,304,165명에 대한 사업비만 산출 (총사업비 미정)

※ 잔여분은 향후 대상자 확정 시 교부한다고 공지

(단위 : 천원)

구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계	4,055,852,800	3,540,507,840	515,344,960
서울	731,731,200	548,798,400	182,932,800